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성가복지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17시

2. 회의장소 : 전주교구청5층 사목상황실

3. 이사 : 대표이사 이병호

이사 김남기, 성태수, 정유진, 김창신, 김봉술, 이남숙
감사 오성기, 최준철

4. 참석자 : 대표이사 이병호

이사 성태수, 김남기, 김봉술, 이남숙

5. 회의안건

1) 성가정의 집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 성가정의 집 2018년 예산(안)	원안가결
3) 천주교성가복지회 2018년 예산(안)	원안가결
4) 임원변경의 건	원안가결
5) 정관변경의 건(기본재산변경포함)	원안가결

[개회]

대표이사 이병호 주교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참석하였으므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성가복지회 이사회의 시작을 선언하다. 참석이사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다.

1) 제1호 의안 : 성가정의 집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설	2017년 2차추경예산(A)	2017년 1차추경예산(B)	증가 (A)-(B)	주요 증감 요인
성가정의 집	359,900,647	344,261,466	15,639,181	세입)운영비 기능보강사업(외벽방수공사) 가, 후원금 및 전입금 증가 세출)재산조성비, 사업비 증가 등

2017년

대표이사 이병호 : 먼저, 성가정의 집 2017년 추경예산입니다. 외벽방수공사 및 외부공모사업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재산조성비 등 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입니다.

이사 김봉술 : 성가정의 집 추경예산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남기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병호 : 김봉술 이사의 동의과 김남기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이사 : 모두 동의

대표이사 이병호 : 전체 이사의 동의로 성가정의 집 2017년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제2호 의안 : 성가정의 집 2018년 예산(안)

시설	2018년 예산(A)	2017년 2차추경예산(B)	증가 (A)-(B)	주요 증감 요인
성가정의 집	341,970,297	359,900,647	△17,930,350	세입)운영비증가, 후원금감소 세출)사업비증가, 복지지원금증가 및 퇴소자 지원등으로 증가

대표이사 이병호 : 두 번째 의안은 성가정의집 2018년 예산(안)입니다. 작년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일시적인 후원금의 증가에 따른 차이로 보시면 되고,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사 성태수 : 원안대로 2018년 예산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봉술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병호 : 성태수 이사의 동의와 김봉술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가정의 집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이사 : 모두 동의

대표이사 이병호 : 성가정의 집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제3호 의안 : 천주교성가복지회 2018년 예산(안)

시설	2018년 예산(A)	2017년 예산(B)	증가 (A)-(B)	비고
천주교성가복지회	52,550,000	52,550,000	0	세입.세출 동결

대표이사 이병호 : 천주교성가복지회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안건입니다. 2018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사 성태수 : 천주교성가복지회의 큰 사업은 불우이웃돕기로 성미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이사 이남숙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병호 : 성태수 이사의 동의와 이남숙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이사 : 모두 동의

대표이사 이병호 : 천주교성가복지회 2018년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호 의안 : 임월변경의 건

대표이사 이병호 : 천주교성가복지회 임월 중 감사(오성기, 최준철)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월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제16조(임월의 선임)에 따라, 신임 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봉술 : 감사님은 효자 4동 성당에 계시는 백승호 신부님을 추천합니다. 과거 재산관리 및 회계 등에 관여하여 일하신 경력이 있고, 본 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분은 공인회계사이며 오랫동안 회계 분야에 종사하신 경험이 풍부한

최종문 회계사님을 추천합니다.

이사 성태수 : 김봉술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사 이남숙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병호 : 그럼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이사 : 모두 동의

대표이사 이병호 : 천주교성가복지회 감사는 백승호 신부님과 회계관련 전문가인 최종문 회계사님으로 결의하였음을 선언합니다.

5) 제5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기본재산변경 포함)

대표이사 이병호 : 이번 안건은 천주교성가복지회 정관변경 건입니다. 김봉술 이사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 김봉술 : 먼저 지난 이사회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정관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와 관련하여 법인의 이사 정수를 1명 늘리는 (안)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정수가 7인일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만일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여 이사정수가 6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군구에 요청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개최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정수를 8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조(겸직금지),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0조(수익사업의 종류)의 내용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등의 변경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표를 참조하시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이남숙 : 임원정수 변경은 이사회 운영을 하는데 매우 좋은 의견으로 동의하며, 기타 다른 사항에도 관리 규정에 따라 변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동의합니다.

이사 성태수 : 이남숙 이사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병호 :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잠시 침묵 후) 없습니다.

그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4.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6인 4. 감사 2인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이사 정수가 7명인 경우 이사 1명의 결원이 발생한다면 이사선임에 있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8인으로 변경이 필요함.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이 법인은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규정 변경
제 22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22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규정 변경
제 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사회의 의사하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규정 변경
제 30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0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변경

전체이사 : 모두 동의

대표이사 이병호 : 정관 변경 건은 오늘 참석한 이사 전원이 동의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본재산 변경건입니다.

이사 김봉술 : 기본재산은 토지의 공시지가 및 건물 과표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본재산 변경내역】

변경전 기본재산	변경후 기본재산	증 감
827,800천원	1,235,453천원	407,653천원 증가

【 기본재산목록 변경현황】

1) 현금 : 변동사항 없음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2계좌	500,000,000	변동없음
합 계	2계좌	500,000,000	

2) 토지

NO.	소재지	지번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면적(m ²)	평가액 (개별공시지가)	면적(m ²)	평가액 (개별공시지가)	
1	전북 군산시 조촌동	775-14	대	436.8	146,320,000 (335,000)	436.8	245,306,880 (561,600)	

3) 건물

N O.	소재지	건물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면적(m ²)	평가액 (공시지가)	면적(m ²)	평가액 (공시지가)
1	전북 군산시 조촌동 775-14	경량철골조 카라짓 단층소매점 144m ²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2m ²	145.2	19,140,000	145.2	14,421,120
2	전북 전주시 덕진 구 진북동 1034-1 동 국 해 성 아 파 트 101동 1505호	철근콘크리트조 134.89m ²	134.89	70,000,000	134.89	136,000,000
3	군산시 683-17	조촌동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 위 우레탄페널 지붕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사회복지시설 345.14m ² 2층 사회복지시설 249.54m ²	594.68	92,340,000	642.36	339,725,903
합계			874.77	181,480,000	922.45	490,147,023

이사 성태수 :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남기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병호 :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잠시 침묵)

그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이사 : 모두동의

대표이사 이병호 : 기본재산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안건이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6. 폐회

대표이사 이병호 : 오늘 논의사항 이외 다른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신지요? 없으면 폐회 동의 바랍니다.

성태수 이사 : 오늘 이사회의 폐회를 동의합니다.

김봉술 이사 : 성태수 이사님의 폐회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사 전체 동의)

2017년

대표이사 이병호 : 오늘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의안이 모두 심의 종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고, 기도로 마친다.)

마침시간 : 17시 47분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 임원이 서명·날인함.

대표이사

이병호



이 사 성태수



이 사

김남기



이 사

김봉술



이 사

이남숙



2017년 12월 19일



사회복지
법 인

천주교성가복지회